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6257
------------------	------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의자 : 김현권 · 박광온 · 이개호  
                · 표창원 · 김철민 · 박주민  
                · 손혜원 · 위성곤 · 전해철  
                · 김영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  
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수습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멸시효의 특례) 4·16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 ② (생 략)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 . 다만, 미수습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한다.
<u>&lt;신 설&gt;</u>	제15조의2(소멸시효의 특례) 4·16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민법」, 「국가  
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